

인도네시아

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
(2013년 11월 18일)
(자카르타 aT)

구분	핵심 내용
관세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주 수입관세 인상
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3년 2월 인도네시아 세관은 소주 수입관세를 종전 리터당 55,000Rp에서 위스키와 같은 125,000Rp 로 상향 적용한다고 발표(127% 인상) ○ 소주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실험실에서 성분검사를 통해 증류주/발효주를 분류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세관은 수입관세기준을 정해 관세 기준에 차이가 있음 ○ 그간 인도네시아 (식약청)은 2년전에 발효주에서 증류주로 분류했으나 (인도네시아 세관)은 이를 간과하고 <u>소주 수입관세를 발효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2012년 12월까지 적용해 왔음</u> ○ 세관 측은 위의 사실을 세관의 불찰로 인정은 하나, 감사팀은 세관내에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해당 수입/통관업체에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수입통관 된 소주전량에 대해 인상된 수입관세 소급 분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상황임 ○ H 대리점은 소주 생산 과정서류(발효과정을 거쳐 물로 희석함을 증명)를 하이트 진로 본사에 요청, 이 서류를 대한민국 외무부/상공회의소/인도네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소주성분 재검사를 의뢰하여 종전 증류주에 포함되었던 소주를 다시 발효주로 인정받았지만 세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기준인 증류주기준 적용만을 주장하고 있음 ○ H 대리점은 “지난 2년간 소주는 발효주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액으로 납부 해왔음 이는 소주 수입/통관사에서 세관과 조율한 내용이 아니며, 세관에서 발행한 납부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한 것임. “2013년 2월까지 어느 소주 수입/통관사도 수입관세가 증류주/발효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, 주세와 수입관세 기준이 알코올 도수로만 분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”고 함

- 세관 통관 서류에도 H.S코드 분류가 발효주로 표시되어 있었고, 주류는 통관 시 항상 검사 최고단계인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통관검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입/통관사에게 수입관세 소급분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임
- H 대리점은 수입/통관업체를 통하여 2년간의 소급분(200억 루피아, 원화로 약20억) 납부 철회 및 식약청에서 결정한 신규기준인 발효주로 수입관세 분류를 받기 위해 현재 세관과 법적 공방 중임.
- 관세청의 기준대로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면 앞으로 소주 판매가격이 약 40%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됨.

시사점 / 대처 방향

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주가 증류주로 결정될 경우 소주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.

발표 일자/ 출처 : Beacukai Indonesia (인도네시아 관세청) '13년 2월 Hanin Post '13년 11월 15일